

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

(박세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0. 12.

발 의 자 : 박세진, 김상조, 김수민
김영호, 김익수, 김춘남
손홍섭, 윤영철, 이명희
정하영, 황경환

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민의식 변화 등으로 화장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구미시종합장사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종합장사시설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(제5조)
- 추진위원회 운영과 회의비 등 제반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(제6조)
-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(제7조)

3. 참고사항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4. 조례안 : 붙임

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구미시 종합장사시설(이하 “종합장사시설”이라 한다)은 구미시 관내에 설치한다.

제3조(화장장 등의 설치) 종합장사시설에는 화장시설을 갖추고 봉안시설, 자연장지, 추모공원 등 장사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 주민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여야 한다.

제4조(추진위원회 구성 운영) ① 종합장사시설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고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② 위원회 구성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입지선정)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최적의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하여 입지를 공모할 수 있다.

제6조(경비지원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② 주민 의견 수렴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제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.

제7조(기금지원)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성과 관련하여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
기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 관 련 법 령 〉

□ 장사 등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·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·시행하여야 한다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제23조(공설묘지 등의 사용료·관리비의 부과)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·공설화장시설·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,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, 시설물 설치·조성비용,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.

제36조(비용의 보조)①국가는 공설묘지·공설화장시설·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·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·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, 묘지면적의 축소, 그 밖에 장례문화를 위한 조사·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□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,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·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,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·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.

찬성자(발의자)서명 명부
(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)

의원명	서명	비고
박 씨진	박 씨진	
김 상조	김 상조	
유 영철	유 영철	
박 영호	박 영호	
한 재환	한	
김 준남	김 준남	
강 국주	강 국주	
정 재영	정 재영	
김 수민	김 수민	
이 영남	이 영남	
이 영민	이 영민	